

[별표 5]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제 1 조 목적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한국성전(이하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ERP에 등록된 협력사를 말한다.
- 2) "협력업체 풀(Pool)"이라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이라함은 한국성전의 ERP에 거래처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협력회사 운용"이라함은 한국성전에 협력회사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회사 pool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 이전에 당사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②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협력업체 등록은 매년 1회 갱신하며, 신규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한다.
- 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 4 조 신규 거래 등록 기준 및 절차

1) 신규거래 등록 기준

- ① 물량 증가로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동일 자재 공급업체의 공급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등록이 필요한 경우
- ② 개발, 구매부서의 검토 결과 기존 거래선에서는 제조, 납품 불가로 판정되어 신규 개발 부품이 필요한 경우
- ③ 기존의 협력업체 보다 품질,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
- ④ 당사의 일시적인 필요성 및 고객사의 요구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
- ⑤ 분사, 합병 등으로 기존업체는 존재하면서 별도의 회사로 변경한 경우
- ⑥ Agency 통한 거래가 직거래 전환 또는 직거래 통한 거래가 Agency 전환 필요한 경우
- ⑦ 원제조사는 동일하나 agency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3)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 4) 신규거래 등록 절차
 - 신규등록 검토 ⇒ 구매부서
 - 선정평가 검토 ⇒ 품질부서
 - 업체등록 진행 ⇒ 구매부서
 - 사후 품질평가 및 후속 조치 진행 ⇒ 품질부서

< 평가방법 >

당사가 제정한 '협력업체프로세스'에 따라 정해진 평가수행방법 (서면 평가, 방문 평가, SAMPLE 평가, 평가 면제)으로 신규업체 등록을 이행한다.

- ① 서면평가 : 평가 대상업체의 자료조사를 기초로 품질보증체제조사표, 환경관리체제조사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판정기준 평가 점수 80점 이상
- ② 방문평가 : 품질보증체제조사표, 환경관리체제조사표를 기초로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평가
*판정기준 평가 점수 80점 이상
- ③ SAMPLE 평가 : 평가 대상의 SAMPLE(SPEC 포함)을 입수하여 품질 관리에 의뢰하며, 품질규격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평가.
*판정기준 : 검사/시험에 합격
- ④ 평가 면제 : 고객이 지정한 업체,
부서장 판단의 필요 시 승인을 득하고 실시

< 평가결과 심의 >

하도급 내부 심의위원회에서는 협력업체의 선정, 등록 평가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 5 조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

- 1)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2) 등록 취소기준
 - ① 부도, 채권압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속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품질 및 납기, 가격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③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④ 협력업체 정기평가 결과가 부진하여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⑤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⑥ 공급품목의 단종으로 향후 지속 거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당사와 거래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 ① 원가 절감계획, 납품단가 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적인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 ③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 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단,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 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 기간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④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 4)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당사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의 불이익)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건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2,09월부터 시행한다.